

춘천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301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박성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진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2. 12. 접수 제452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 6.경 당진시 D리 일대에 농어촌휴양단지를 조성하는 E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나. 한국농어촌공사와 F는 2016. 2. 26. 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의하면 F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협약이행보증금으로 1단계 사업의 사업비 711억 1,0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21억 3,330만 원을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F가 약정된 지급기한까지 협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하게 된다.

다. F는 2016. 4. 18.경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협약이행보증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2016. 5. 13.경 원고와 피보험자 한국농어촌공사, 보험기간 2016. 2. 26.~ 2018. 12. 31., 보험가입금액 11억 2,500만 원으로 각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였는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F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약정된 지급기한인 2017. 1. 25.까지 나머지 협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 2. 8.경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11. C에 50억 원을 대여하고, C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1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45225호로 채권최고액 15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8. 1. 11. C에 추가로 50억 원을 대여하였다.

바.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9. 3. 11. 한국농어촌공사에 1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C은 2017. 12. 11.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5,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3. 9. C이 소유한 별지1 목록 제16, 18, 4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2383호), 2017. 7. 6. 별지1 목록 제2 내지 15, 17, 19 내지 3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2383호).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5057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8. ‘C은 원고에게 구상금, 지연손해금으로 1,118,822,801원 및 그중 1,026,978,981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0. 5. 6.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20. 10. 23. 별지1 목록 제1, 4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155,912,08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7233).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C은 54개의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의 합계액은 8,295,663,800원이었다.

(5) 한편, 별지1 목록 제2 내지 15, 17, 19 내지 39, 41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2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12. 26. 접수 제59583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2017. 12. 11.을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339,728,390원이었고, 별지1 목록 제16, 18, 4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7. 2. 15. 접수 제5901호로 근저당권자 H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또는 구상금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 등 그 재산상태를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F가 협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지한 2017. 2. 8.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2019. 3. 11.경 사이에 이미 C 소유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위 각 가압류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는 H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0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채권최고액 4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점, ③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C이 위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피고가 채권최고액 15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2020. 10. 23.경에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실 및 C에게 손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한 2022. 2.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부상준, 판사 지예현, 판사 배성준

별지